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1
----------	------

제출년월일 : 2010. 8. 1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 운용중인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고정 3%)」 및 국토해양부에서 운용중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연 2%)」 제도와 비교하여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이자율(연5%)이 상대적으로 높아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상환이자·연체이자의 하향조정 및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하여 융자금 회수율 증대 및 체납금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여 융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상환이자·연체이자를 시중금리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안 제11조).
- 나. 일반융자금의 대여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및 학자금 대여금액을 3백만원 이하에서 4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안 17조).
- 다. 일반융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2%로, 연체이자를 연 10%에서 연 7%로 하향조정 (안 17조).
- 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신설(안 19조).
- 마.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에 감면조치 대상 마련(안 23조).

바. 융자금의 결손처리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신설(안 2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0.1.29. ~ 2.18.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자활사업참여자"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 자활센터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출연금 및 안산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4.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사업지원금
2. 생활안정자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6. 영 제26조의4제2의2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②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3.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자금
4.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직계비속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9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활사업참여자
2.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를 위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0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요청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2회(최장4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④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⑤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사업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자가 지원목적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생활안정자금 대여기준) ①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로서 대여 신청일 현재 안산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대여금액 · 상환기간 · 이율 등) ①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학자금용자는 1세대당 4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융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후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기존 대여금의 상환 이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8조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

2. 재학증명서(학자금용자에 한함)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요청받은 동장은 해당자의 융자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20조 (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되지 아니한 융자금(이자포함)을 감면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 혹은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2.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면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결손처분) ①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 한 때에는 해당 융자금을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

조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기금의 상
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